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나.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

다.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재확인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양 당사국 간에 적용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포함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5.4조
동등성

1. 수출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조치 또는 동일한 생산품을 거래하는 수출 당사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2.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특정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양자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3. 특정 생산품 또는 생산품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그 당사국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고려는, 그 자체만으로 진행 중인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생산품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5.5조
위험평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는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된다. 위험평가는 이 장의 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따를 것이다.

3. 긴급조치[1]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

제5.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1.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2. 자국 영역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 당사국은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계속하여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각각 수입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에 부여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국은 그 이유를 시기적절하게 설명한다.

[1] 긴급조치란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이 관련 수출 당사국에 적용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제5.7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에서 상호 합의되는 협력 및 기술지원 절차를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해충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그리고 국내 규정에 관한 정보 교환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나.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역량 및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다.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식품 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경험을 교환하며, 그러한 연구 및 경험의 결과를 공유한다.

3.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 관심 생산품에 대한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관한 규제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부속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 당국의 관심을 고려하여 그들의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제5.8조
정보교환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의 중대한 비준수에 관한 관련 정보를 권한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당국을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서로 교환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접촉선을 수립하며, 이 접촉선은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어로 문의하는 경우 영어로 답변한다.

4.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위험분석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분석 절차의 상태를 알린다.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행정 또는 입법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한다.

제5.9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기반해야 하고, 양자 간의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됨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다.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비준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소통한다.

바.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사안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합의된 용어와 조건에 기초한 기술 협의의 수립을 고려한다. 당사국이 기술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통보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의 통보 후 18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 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사안, 입장 및 의제에 대하여 조정한다.

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 그리고

자.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 및 규범 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사안과 관련된 양자 간 이해를 증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수립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6. 이 장의 이행, 특히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 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5.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